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9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형재,
민병주, 서상열, 아이수루,
,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최기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신체, 정신적 손상, 기능상실에 의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소통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부모,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상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및 정의상 규정한 정당한 편의 지원 조항 규정 (안 제8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단의 개발·보급”을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p> <p>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u>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u></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u>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u></p>

2. ~ 4. (생략)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략)

<신설>

제9조 (생략)

·보급·지원-----

2. ~ 4. (현행과 같음)

5. -----
----- 사항 및 정
당한 편의 지원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재정소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센터업무 규정) 안 제8조에 센터 업무수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등) 자료 및 누리집 등 확인하였으나, 검토결과 현재 센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사업을 기추진¹⁾하고 있어 향후 관련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²⁾ 별다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보완대체의사소통 : 말이나 글을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스처, 그림, 사진, 수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음
 - (협력체계 규정)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업무협조(MOU체결) 관련 비용은 통상적으로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과 같은 일회성 소액지출이므로 이례적으로 단일편성(가령 협력 체계가 사업운영의 핵심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재정소요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서울시장애포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410,301천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월~2025.12월
- 사업내용
 -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플랫폼 운영
 -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구축

2) [사업확대 미고려] 통상 기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규정은 ① 확대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고, 나아가 ② 다양한 지출요인에 따라 적정 확대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출계획, 예산 한정성,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과 같은 재정지출 영향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복지과 등)에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 별다른 확대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 고려사항에서 제외함